

「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「공인중개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내용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 아울러 과태료부와 관련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, 청약 업무 담당기관 변경에 따른 정보연계기관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인중개사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내용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(안 제7조제1항제5호)
- 나.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제2항)

- 다.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시 확인·검토 사항의 주체를 기존 신고관청 외에 국토교통부(수탁기관)도 포함(안 제8조, 제9조)
- 라. 「질서행위규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에 의견제출 및이의제기 관련 안내사항 개선(안 별지 제5호서식)
- 마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인·신고대상을 명확화하고, 청약정보 담당기관 변경에 따른 정보연계기관 변경, 과태료 기준규정 인용규정 수정(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5호, 제5조제2항, 제9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, 전화 044-201-3590 / 359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: 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, بانک빌딩 8층
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
- 2) 전자우편: ysy2002@korea.kr
- 3) 팩스: 044-862-4237